#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 송옥주 · 이성만 · 한정애

박 정・임종성・안호영

박찬대・정춘숙・유동수

박용진 · 김영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貼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첩부 장소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선거벽보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첩부될 우려가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건물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함에 따라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 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122조의2).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한"을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公告"를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로 한다.

①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중 "撤去의 費用"을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선거벽보) ① ~ ⑨ (생	제64조(선거벽보) ① ~ ⑨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		
	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		
	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ـ ●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u> </u>		
첩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地·建物 그 밖의 시설			
물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특	<u>선</u>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	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		
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소유		
	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		
	별한		
①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u>®</u>		
신청, 數量公告·規格·작성·제출·			
확인·첩부·經歷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私生活誹謗으로 인한			
告發事實의 公告 그 밖에 필요	<u>공고, 선거벽보 첩</u>		

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u>撤去의 費用</u>

2.	$\sim$	7	(생	략)
⊿.		ι.	( 0	コノ

④ (생 략)

부를 위한 협의절차,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u>철거의 비용(첩부</u>
및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
용을 포함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